#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

2023. 11. 24.



| I. 추진 배경 및 성과 ······· 1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Ⅱ. 제5차 계절관리제 기본체계 3      |
| Ⅲ. 분야별 이행과제 4            |
| 1. 핵심 배출원 감축·관리 ······ 6 |
| 2. 국민건강 보호 8             |
| 3. 공공분야 선제 감축 12         |
| 4. 국제 협력 13              |
| Ⅳ. 고농도 발생시 위기관리 체계 가동 14 |
| V. 향후 계획 ······ 15       |

### I. 추진 배경 및 성과

### 1 근거 법률

- □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1조
  -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
  - **시·도지사**는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조치 단독 시행 가능

### 2 계절관리제 필요성

- □ 매년 12~3월은 미세먼지 농도 증가
  - 지난 5년간 초미세먼지 전국 연평균 농도는 대폭 감소했으나('18년 23μg/m³ → '22년 17μg/m³), 계절적 요인으로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평균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약 30% 높은 상황이어서 특별관리 필요
    -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3분기 저점 이후 10월부터 상승으로 전환

### 

【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】

- □ 특히, 고농도 미세먼지(50µg/m³ 이상) 발생 사례도 12~3월에 집중
  - 비상저감조치 제도 시행("17.12월~) 이후 발령일 중 82%(총 67일 중 55일)가 12~3월에 집중되어 국민 생활과 건강에 피해 야기

### 그간 성과 및 전망

3

- □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국내 배출량 저감으로 고농도 완화 성과
  - (배출량 저감) 5등급 차량 운행제한, 석탄발전 감축 등으로 매년 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배출량 감축

【계절관리기간 감축량 (단위 : 톤) 】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<b>PM-2.5</b> (1차) | SOx    | NOx    | VOCs   | 합계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제1차 ('19.12~'20.3월) | 3,020              | 21,725 | 38,660 | 21,309 | 84,714  |
| 제2차 ('20.12~'21.3월) | 3,383              | 28,798 | 40,736 | 21,291 | 94,208  |
| 제3차 ('21.12~'22.3월) | 3,886              | 32,876 | 47,647 | 21,881 | 106,290 |
| 제4차 ('22.12~'23.3월) | 3,779              | 34,450 | 45,987 | 21,770 | 105,986 |

- \* 감축량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('18.12월~'19.3월) 배출량 대비 수치
- \*\*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식 개선('23.4월)을 반영하여 감축 실적 재산정
- (대기질 개선)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하락하고, 좋음·나쁨 일수도 모두 개선

### 【 계절관리기간별 대기질 변화 】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시행 前           | 제1차            | 제2차             | 제3차             | 제4차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|
| 1 =                   | ('18.12~'19.3월 | ('19.12~'20.3월 | ('20.12~'21.3월) | ('21.12~'22.3월) | ('22.12~'23.3월) |  |  |
| PM-2.5 평균 농도 (µg/m²)  | 33.4           | 24.5           | 24.3            | 23.3            | 24.8            |  |  |
| '좋음(15µg/m³↓)' 일수(일)  | 13             | 28             | 35              | 40              | 31              |  |  |
| 'L쁨36µgm³↑)' 이상 일수(일) | 35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| 18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|  |  |

- □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사회·경제활동이 회복되고, 기상여건이 불리
  - (기상여건) 엘니뇨 발생 등으로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 강화(기온↑)
     가능성이 높아 대기정체 빈발 우려('23.11월, 기상청)
  - (국외유입) 중국은 산업·수송부문 감축 등을 포함한 추동계 대책
     ('23.10~'24.3월) 추진 중이나, 발전량 및 물동량 증가\* 등으로 불리한 여건
    - \* (발전량) 23.1~9월 누적 6,591만GW, 전년 동기(6,257만GW) 대비 5.3% 증가 (화물수송량) '23.1~9월 누적 297억톤, 전년 동기(276억톤) 대비 7.58% 증가(중국 국가통계국)

### Ⅱ. 제5차 계절관리제 기본체계

목 표

# PM-2.5 3,798톤(17%), SOx 34,452톤(41%), NOx 48,047톤(13%), VOCs 22,083톤(7%) 감축

※ 계절관리제 시행 전('18.12월~'19.3월) 배출량 대비

### 추진 방향

- 1.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국민 생활공간 조성
- 2. 과학과 현장 기반 핵심 배출원 집중 감축·관리
- 3. 공공부문 감축 선도 및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

## 주요 과제

# 핵심 배출원 감축·관리학심 배출원 감축·관리1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<br/>② 운행차 및 자동차<br/>민간검사소 집중단속<br/>③ 건설공사장 노후<br/>건설기계 사용제한<br/>④ 선박·항만 미세먼지 감축<br/>⑤ 교통 수요 관리산업<br/>발전⑥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<br/>② 석탄발전 가동 축소<br/>⑧ 실시간 원격감시 및<br/>출동체계 가동

### 국민건강 보호

- ⑩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및 지원
- ⑪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공기질 관리
- ② 미세먼지 안심공간 마련
- ③ 도로 미세먼지 제거
- ④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
- ⑤ 농촌 불법소각 방지
- ⑩ 예보 서비스 확대
- ⑪ 예보 신뢰성 제고
- ⑩ 대기질 정보 제공

### 공공분야 선제 감축

⑨ 에너지 수요 관리

- ⑩ 공공 사업장 및 차량 선제 감축
- ② 공공부문 사전 점검
- ② 공공부문 비상시 긴급 감축

### 국제 협력

- ② 한·중 협력 지속
- ② 동아시아 협력 확대

### Ⅲ. 분야별 이행과제

1 핵심 배출원 감축·관리

### 가. 수송 부문

### □ 5등급 차량\* 운행제한 확대

- \* (대상) '06년 이전 제작 경유차, '88년 이전 제작 휘발유 및 가스차
- \*\* (지역) 수도권('20.12월~) → 부산, 대구('22.12월~) → 대전, 광주, 울산, 세종('23.12월~)
- (수도권) 저공해 조치\* 차량, 법령에 따른 제외 차량\*\* 및 저공해 조치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소상공인 차량을 제외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실시
  - 소상공인은 법정 증명서(소상공인 확인서)뿐만 아니라 평균 매출액과 근로자 수 증빙서류까지 인정하여 서류제출 부담 완화
  - \*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·교체
  - \*\* 긴급자동차, 장애인용,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(補綴用)·생업활동용, 국가 특수목적, 외국공관 등 차량(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)
- (특·광역시)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제외 차량에 더해 영업용 차량, 저공해 조치불가 차량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 소상공인\* 차량 등을 제외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실시
  - \* 수도권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서류제출 부담 완화
  - 적발되더라도 '24.9월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시 과태료 미부과

### □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집중단속

- (운행차) 원격측정장비·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하여 화물차, 버스 등의 배출가스 및 불법 공회전 집중 단속\*, 공항내 특수차량도 수시점검
  - \* 안전신문고, 에어코리아, 대기오염 신고전화(☎128)를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 → 지자체는 신고된 차량 소유자에게 무료 검사 안내
- (검사소) 부실검사 의심 민간검사소\* 대상 환경부, 국토부, 지자체 등 합동단속(12월),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현황 상시 모니터링
  - \* 전체 1,800여개 검사소 중 합격률이 높은(측정값 의심) 업체 상위 10%(약 180개소)

### □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<sup>\*</sup> 사용제한

- \* (대상) 덤프, 믹서트럭 등(2.5만대) : '05.12.31. 이전 제작 / 지게차:굴착기(8.6만대) : '04.12.31. 이전 제작
- (관급) 대기관리권역 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 단속
  - 관급공사 발주시 계약(일반·특수) 조건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명시,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출입을 원천통제하는 QR코드 부착 시범사업 추진
- (민간)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 점검·관리\*, 건설사(17개사)와 협약체결을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
  - \* (제4차) 서울, 경기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  $\rightarrow$  (제5차) 부산까지 확대

### □ 선박·항만 미세먼지 감축

- (저유황유)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\* 준수 여부 집중 단속
  - \* 배출규제해역(부산, 인천, 여수·광양, 울산, 평택·당진) 0.1%, 기타 모든 해역 0.5%
  - \*\* (4차) 630척(내항선 320, 외항선 310) → (5차) 690척(내항선 350, 외항선 340)
- **(저속운항)** 4대 대형항만<sup>\*</sup>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(73% 목표)
  - \* 부산, 인천, 여수·광양, 울산
  - 참여 선박의 입출항료 감면율을 평시보다 10%p 상향(컨테이너선 30→40%, 그 외 15→25%)
  - 울산항은 저속운항 업무 대행 해운대리점에 인센티브(1건당 3만원) 제공
- (항만관리) 4대 대형항만 내 운행차량 제한속도(10~40km/h이하) 준수 여부 단속, 인천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항만 출입제한 권고

### □ 교통 수요 관리

- (부담금 감면) 대형 시설물 소유자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차장 폐쇄 또는 차량 2부제에 참여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(서울)
  - \* 서울시 조례에 따라 2부제 참여시 5% 이내, 주차장 폐쇄시 10% 이내 감면
- **(주차요금 할증)** 공영주차장 이용시 계절관리기간 **5등급 차량**(장애인 차량 등 제외)에 **주차요금 50% 할증**(서울)

### 나. 산업·발전 부문

### □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

- (이행관리) 자발적 협약 참여 사업장에 계량적 감축목표(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%) 부여,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\* 차등 제공
  - \* 오염물질별 감축 비율만큼 기본부과금 감면, 우수사업장 지도·점검 주기 확대 등
  - 실시간 배출정보를 토대로 중점관리 사업장(전년대비 배출량 변동) 선정, 환경청 중심으로 이행점검 강화
- (대상확대) 발전시설, 신규 다배출 사업장 등 **자발적 감축을 위한 협약 사업장 확대**(375개소 목표)

### □ 실시간 전방위적 감시 및 출동체계 가동

- (원격 감시) 사업장별 부착한 측정기기(TMS\*, IoT\*\* 등)를 기반으로 대형사업장(1~3종)에 더해 중소사업장(4~5종)까지 실시간 원격관리
  - \* 굴뚝원격감시체계(TMS) : 7종 오염물질(먼지,  $NO_X$   $SO_2$  등) 상시 모니터링
  - \*\* 원격사물인터넷 측정기기(IoT) : 온도·압력 등으로 방지시설 가동여부 판단
  - TMS 기반으로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실시간 감시
  - IoT 기반으로 중소사업장의 방지시설 가동 상황을 사업자에게 실시간 분석·제공하고, 비정상 운영사업장을 관할청과 공유\*
    - \* IoT 의무부착 대상 중 비정상운영 의심 사업장 리스트를 유역(지방)환경청·지자체에 제공
- (통합 감시)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 운영('23.11월~), 감시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로 측정부터 단속까지 원스톱 감시체계 구축
  - ※ (기존) 사업장 배출관리는 TMS·IoT, 지도·단속은 첨단감시를 활용하여 이원적 관리 → (개선) 첨단감시 정보에 이상징후 감자시 TMS·IoT데이터로 분석, 불법 의심 사업장 신속 점검
  - 첨단감시장비 측정정보 통합관리 시범사업\*(인천)과 신규 분광 기술\*\*을 활용한 사업장 공정개선 등 기술지원 시범사업(충남) 추진
  - \* (1단계) 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감시 → (2단계) 사업장 배출 정보 연계 → (3단계) 우심사업장 선별
  - \*\* 태양추적분광기(SOF) 활용으로 배출가스 누출 등을 감지, 사업장에 정보제공 등 기술지원

- 첨단감시센터 중심의 전문적인 **장비 관리체계**\* 구축, 계절관리기간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 **투입 횟수 확대**(4차 대비 10%↑)
  - \* 계절관리제 시행 전 첨단감시장비(8종 74대) 일괄 점검, 주기적 검·교정
- (신속 단속) 원격감시, 첨단감시센터 운영, 민간점검단\*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환경청(감시단)·지자체와 협업하여 의심사업장 신속 단속
  - \* 집중점검구역(주요 산단 등)에 민간점검단(약 1,300명)을 배치하여 순찰·감시

### □ 석탄발전 가동 축소

- (공공) 석탄발전 53기 중 최대 15기 가동정지, 47기 상한제약을 추진 하되 LNG수급 및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전력 당국이 유연하게 운영
  - \* 4차 운영실적 : 8~14기 가동정지, 최대 44기 상한제약
  - ※ '24.3월 중 석탄발전 감축 규모는 「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」으로 발표('24.2월)
  -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해 대기오염 방지지설 가동을 확대\*('22.12월 15기→'23.12월 20기)하고 고배출 발전기를 정지\*\*하는 등의 정책노력 으로 미세먼지 배출목표를 전년보다 3% 이상 하향
    - \* 보령#4.5.6(574억원), 당진#1.4(1,598억원) 등 5호기 설비공사에 총 2,172억원 투자
  - \*\* 가장 미세먼지 배출순위가 높은 동해#1 가동정지 ('23.12.1~'24.1.5일)
- (민간) 민간 석탄발전소는 자발적 협약\*을 통해 계절관리제에 참여하고,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
  - \* (旣 체결) 북평 #1·2, 고성 #1·2, 강릉안인 #1·2, (예정) 삼척 #1·2

### □ 에너지 수요 관리

- (공공) 기관별 에너지절감방안\* 수립·시행, 기관장 주도 이행실적 평가·관리\*\*
  - \* (주요내용) 실내 난방온도(18°C) 준수, 지하주차장 조명 50% 소등, 승용차요일제 준수 등
  - \*\* 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동절기 에너지 절감 실적 평가('23.12~'24.2월)
- (민간) 에너지 절약 대국민 홍보·캠페인 전개 및 기업 참여 유도
  - 에너지절약 필요성 및 실천요령, 난방비 절감 팁 등을 다양한 매체 (공익광고, SNS 등)로 홍보, 국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절약문화 확산
  - 30대 다소비 기업과 자발적 효율혁신 파트너십\*을 통해 우수기업에 **인센티브(**금융·기술개발 우대 등) 제공
    - \* '23~'27년간 에너지원단위(에너지투입량/생산액) 매년 1% 개선 추진

### 2 국민건강 보호 및 소통

### 가. 국민건강 보호

### □ 민감·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및 지원

- (점검) 어린이집, 학교,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·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각 시설별 기관장 책임으로 자체 전수점검(~11월)
  - 미흡사항 발생기관에 보완점검, 관계기관 현장점검 병행

### 【민감·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계획】

| 구 분    | 내 용  |
|--------|--|
| 어린이집   | ■ 동절기 안전점검('23.11~'24.1월)과 연계, 전체 어린이집의 15%(약 4.300개소) 이상 현장점검   |
| 유치원·학교 | ■ 각급학교 자체 전수점검(2만여개, '23.3월) 결과, 미흡사항 발생 학교를 대상으로<br>시·도 교육청 보완점검 및 교육부 주관 현장점검 실시<br>※ 학교(자체점검, 점검결과 가정통신문 송부) → 시·도교육청(보완점검) → 교육부 주관(시도교육청 합동) 현장점검 |
| 노인요양시설 | ■ 동절기 안전점검('23.11~'24.1월)과 연계,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15%(약1,700개소) 이상 현장점검  |
| 사회복지시설 | ■ 동절기 안전점검'(23.11~'24.1월)과 연계, 장애인거주시설, 지역아동센터, 지역자활센터 등<br>대상 공기청정기 설치·관리 현황 포함 10%(약 650개소) 이상 현장점검  |

- (지원) 실내공기질 진단·개선을 지원하고, 옥외근로자에 마스크 제공
  - 전문기관(실내공기질 관리센터) 신규 지정으로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질 진단·개선 컨설팅 지원 고도화\*
  - 옥외작업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\*에 방진 마스크 50만개 배포
    - \* 상시근로자 50인 미만, 환경미화, 건설 현장, 택배,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

### □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공기질 집중 관리

- (점검) 미세먼지 고농도 지하역사\*, 대규모 시설(지하도상가, 대합실 등)의 환기·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및 관리 여부 특별점검(4,701개소)
  - \* 연평균 농도 50µg/m³ 초과, 측정 일수의 30% 이상 50µg/m³ 초과 등 78개소(서울 75, 경기 3)
  - 특히, 노후역사가 많은 서울지역은 지하역사 전수점검(331개소)

- (관리)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확대 및 고농도시 대응체계 구축
  -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자동측정망 확대(54→71개소)
  - PC방, 지하도 상가 등의 시설군별 오염물질 발생 특성 및 공기질 관리방법을 포함한 **시설별 맞춤형 행동지침 개발**
  - 미세먼지 농도 증가 지하역사\*, 공항 터미널 등에 대한 수시 습식청소, 고농도시 저감시설 운영 강화 등 집중관리
    - \* 초미세먼지 농도가 35µg/m³ 이상인 역사 중에서 전년 동월 대비 농도 50% 이상 증가

### □ 미세먼지 안심공간 마련

- (집중관리구역) 미세먼지 쉼터 버스정류장, 미세먼지 신호등, 에어 샤워 등을 구비한 집중관리구역 확대(누적 56개소)
  - 구역 내 시설물 자체점검 강화로 고농도 시기 취약계층 보호

【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\* 신규 지정 현황('23.4월~)】

| 시도 | 시군구 | 읍면동      | 지정면적(km²) | <b>취약계층시설</b> (개소) | <b>대기배출시설</b> (개소) |
|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광주 | 서구  | 풍암동      | 1.35      | 64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|
| 경기 | 수원시 | 정자3동     | 0.59      | 28 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     |
| 경기 | 용인시 | 백암리, 근창리 | 5.69      | 11    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   |
| 경기 | 안양시 | 박달2동     | 0.61      | 33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|

<sup>\*</sup>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나 노인 등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

### 나. 생활 속 감축

### □ 도로 미세먼지 제거

- (청소차) 내연기관 청소차('21년부터 경유차 지원 종료, CNG 축소) 비중 축소, 전기·수소 청소차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 운행
  - \* 도로 청소차 : (제4차) 1,794대, 저공해 664대 → (제5차) 1,854대, 저공해 708대 목표
- (집중관리도로) 취약지역,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에 집중관리도로를
   추가 선정\*하여 계절관리기간 집중 청소(1일 1회 → 2~4회 이상)
  - \* (제4차) 495개 구간, 2,003km → (제5차) 696개 구간, 2,328km 목표

### □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

- (점검) 비산먼지 발생 저감 조치\* 이행여부 집중단속, 서울시는 대형 공사장(연면적 1만㎡ 이상, 70개소) 대상 상시 모니터링\*\* 시범 실시
  - \* 분체상 물질 야적시 방진 덮개 사용, 수송차량은 적재함 밀폐 및 측면살수 후 운행 등
  - \*\* 간이측정망으로 측정한 정보를 통합시스템에 전송, 고농도시 공무원·공사장 관계자에 통보
- (자발적 감축) 대형은 물론 중소공사장까지 자발적 협약을 체결 (17개사, 740개 공사장)하여 강화된 저감조치 시행 및 이행관리(월 2회)
  - \* 환경전담자 고정배치, 인근 도로 청소 추가, 가설도로 포장, 풍속계 설치 등
  - ※ 계절관리기간 중 철강 등 비산먼지 다배출 공사장에 억제제 투입 시범 추진

### □ 농촌 불법소각 방지

- (시설확충)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767개소 확충 지원(누적 9,300개소)
   및 지역별 위치정보 제공(www.농사후.kr)
- (집중수거) 영농단체(새마을운동중앙회 등)와 협업하여 집중수거 기간에 수거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
  - 영농폐기물은 거점별 대량 수거와 병행하여 경작지 소량 수거 병행
  - 영농부산물은 가을철부터 취약계층 대상 수거·파쇄 집중 추진
- (홍보·교육) 지자체, 농업단체 중심으로 적정 영농폐기물 처리 방법 교육 및 캠페인\* 집중추진,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 운영 등
  - \* 공동집하장 현수막, 누리집 등 홍보채널 다각화

### ─ 【 영농잔재물 적정 수거·처리 가이드라인 】───

- ① (지자체 책임제)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수거·처리 체계 수립
- ② (**재활용 우선**) 논·밭 등에서 수집·배출이 불편하고 폐기물 수거체계가 열악한 농촌 특성을 고려하여 경작지에서 파쇄·퇴비화를 우선 추진
- ③ (소각 처리) 영농부산물 특성에 따라 파쇄·퇴비화가 불가능하거나, 병충해 등으로 소각이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에서 수거·소각 처리

### 다. 정보제공

### □ 예보 서비스 확대

- (사전예보)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(50µg/m³ 초과) 예보정보 제공 지역을 수도권에서 충청권·호남권\*까지 확대
  - \*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전체 50µg/m³ 초과일 중 81%가 수도권·충청권·호남권 발생 ※ 단계적 확대('22.11월 수도권 → '23년 충청·호남권 → '24년 강원·영남·제주권)

### □ 예보 신뢰성 제고

- (원인분석) 환경위성, 선박, 지상, 항공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한 입체 관측으로 대기오염 원인분석 강화
  - 계절관리기간 고고도 측정망\*으로 상층부 측정, 항공 및 선박 집중 관측으로 서해, 수도권, 충남 대형 배출원 중심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
    - \* 인천 : 송도 포스코타워(305m), 서울 : 북한산(220m), 남산(255m), 관악산(630m)
- (예보고도화) 동북아 지역 환경위성·지상측정자료를 예보모델에 실시간 반영하여 고농도 예보 강화('24년~)

### □ 대기질 정보 제공

o 지하역사, 학교 등 국민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 제공

### 【대기질 정보 제공 현황 및 계획】

| 대상시설       | 제공정보   |
|------------|--|
| 다중이용시설     | ■ 지하상가, 산후조리원 등 최신 측정정보와 측정지점 공개(www.inair.or.kr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학교         | ■ 학교 인근 대기질 정보 공개 (wwww.airkorea.or.kr)<br>■ 교내 측정 결과 학교 누리집 및 학교알리미 공개 예정('24.4.) |
| 지하역사       | ■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실시간 의무 공개(실내공기질법 제4조의7 제3항)   |
| 주거지 인근 공사장 | ■ 자발적 협약 참여 공사장(355개소)의 간이 측정기 측정값 실시간 공개  |
| 집중관리도로     | ■ 도로 먼지 측정정보를 먼지지도로 제공(www.airkorea.or.kr)   |

### 공공분야 선제 감축

3

### □ 공공 사업장 및 차량 선제 감축

- (사업장) 공공 발전(17개소), 지역난방공시(12개소), 공공 자원회수시설(26개소) 등 공공사업장은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자발적 협약으로 선제 감축(10월~)
- **(차량)** 행정·공공기관 **5등급 차량\* 운행제한 조기 시행**(11월~) \* 연구·전시 등 비주행목적 차량은 제외, 5등급 차량 매각 금지 및 조기 폐차 시행

### □ 공공부문 사전 점검

- (첨단감시) 유역·지방환경청과 지자체는 주요 산업단지에 첨단 감시장비 활용한 합동점검 조기 실시(11월)
- **(소가방지) 영농단체**(새마을운동중앙회 등) 예방 캠페인 및 사전 교육과 지자체(농정·환경·산림부서)는 **영농잔재물 불법소각 집중단속**(11월)
- **(역사청소)** 지하역사·지하도상가 등 **일제 청소** 및 공기정화설비· 환기설비 등 **사전점검**(11월)
- (운행제한) 전국 5등급 차량에 운행제한 사전 고지 및 운행제한
   시행지역 내 5등급 차량 모의단속 시행(10~11월)

### □ 공공부문 비상시 긴급 감축

- (예비저감)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및 차량 2부제를 포함한 예비저감조치 전국\*시행
   \* (제4차) 수도권 → (제5차) 전국 확대
- (차량)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행정·공공 기관 차량 2부제\* 시행
  - \* 친환경차, 특수목적·비상근무 차량 등을 제외한 행정·공공기관 공용차·자가용 차량 대상

### 4 국제 협력

### □ 한·중 협력 지속

- (정책공조)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사전 공유(11월), 시행 중 고농도 발생시 정보 교류\*(수시), 시행 후 성과 공유로 양국 계절관리제 全과정 정책공조 지속
  - \* 중국 실시간 관측정보를 국내 예보에 활용
- (산업·기술교류) 국내 미세먼지 저감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지원, 자동차오염방지 등 분야별 기술 교류 기회\* 제공
  - \* (산업) 한중 환경산업협력 포럼(11월), 한중 수출협의체 세미나('24.1월) (기술) 예보정보·기술교류 워크숍(11월), 자동차 오염방지 기술교류 포럼(11월)
- (공동연구) 계절관리기간 한·중 8개 도시\*에 설치된 공동 관측망 집중관측(일 1회)으로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발생원인 조사
  - \* 中 : 베이징, 바오딩, 칭다오, 다롄, 韓 : 서울, 제주, 인천, 광주

### □ 동아시아 협력 확대

- (UNESCAP) 아·태 대기오염 행동계획\*('22.11월) 후속조치로 '대기질 개선 지역협력 결의안' 발의에 참여('24.2월, 제6차 유엔환경총회)
  - \* 아시아-태평양 지역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의 기본 요소 제시
- (UNDP) CABSA 프로그램 대상 국가를 확대\*하여 우리나라 환경위성과 참여국의 지상 관측망을 활용한 아시아 대기질 개선·관리 지원
  - \* CABSA : Clean Air for Blue Sky in Asia (1단계, '21년~) 태국, 라오스, 캄보디아 → (2단계, '24년~) 방글라데시아, 베트남, 몽골 추가
- (한·미협력) 한(과학원)·미(NASA) 공동으로 겨울철 한반도와 아시아의 대기질 조사 및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(\*24.2~3월)
  - \* 항공관측기 7대(한국 4대, 미국 3대)를 활용, 지상, 항공, 모델, 위성 정보를 종합하여 한국, 필리핀,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대기질을 분석('25년 발표)

### Ⅳ. 고농도 발생시 위기관리 체계 가동

- □ (대응체계) 고농도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·운영
  - 고농도 시「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(개정 '23.10월)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위기관리 체계 가동
    - 고농도 지속 또는 악화 정도에 따라 **위기경보단계 발령**(관심 → 주의 → 경계 → 심각) 및 **기관별 상황실 설치·운영** 
      - ▶ (관심)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운영, (주의) 부처별\* 상황실 추가 운영 \* 산업부·농식품부·해수부·국토부·교육부·복지부·고용부
      - ▶ (경계·심각) (경계·중앙사고수습본부(환경부 장관), (심각)중앙재난대책본부(행안부 장관), 지역사고수습본부(유역·지방환경청장),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(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) 가동

### □ (저감조치) 위기경보단계별로 비상저감조치 시행

※ 환경부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조치사항 합동점검회의 개최(08:00), 17개 시·도 및 11개 부처 기관장 등 간부급 현장점검 실시

### 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위기 관리체계 】

| 위기 경보      | 관 심  | 주 의   | 경계 / 심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|---|--|
| 발령 기준      | 당일 50μg/m³ 초과 +<br>다음날 50μg/m³ 초과 예보 등           | 관심 단계 3일 지속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의/경계 단계 3일 지속 등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응 방향      | 공공 + 민간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공부문 대응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난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상<br>저감조치 | 석탄발전소 상한 제약,<br>사업장·공사장 가동률 조정,<br>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| 관심 단계 + 관급공사장<br>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,<br>관용/공공차량 운행제한 등 | 주의 단계 + 관급공사 전면<br>중단, 민간물자 동원 검토<br>등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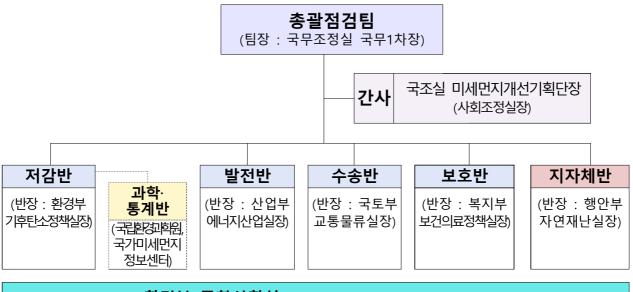
- (관심) 사업장 의무 감축조치 시행\*,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
   (각 시·도), 도로 청소 강화(1→2~4회 이상, 소방차 도로청소 지원) 등
  - \* 화력발전 상한제약, 의무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
- (주의) 관용·공용 차량 운행 전면 제한(긴급차량 등 제외), 전국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, 탄력 근무 권고 등
- (경계·심각) 관급공사장 전면 중단 및 민간공사 중단 권고, 민간 보유물자 동원(예 : 살수차), 마스크 무상 배포 등

### Ⅴ. 향후 계획

- □ 부처 /시·도별 세부 시행계획 마련 : 11월 중
  -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확정(~11월)
  - 17개 **시·도별 세부시행계획** 마련(~11월)
- □ 대국민 집중 소통·홍보기간 운영:11~12월
  - 부문 및 대상별 소통·홍보 이행
- □ 계절관리제 이행(12~3월) 관리 및 이행실적 결과 발표 : ~5월
  - ㅇ 범부처 총괄점검팀을 중심으로 이행실적 지속 점검
    - 고농도 발생시 환경부 소속 종합상황실 중심으로 상황 관리
  - 과제별·지자체별 추진실적 종합 및 발표
  - 계절관리제 종합 이행실적(시·도평가 결과 포함) 및 효과 분석·발표(5월)

### 붙임 1 범정부 이행점검 방안

- □ (기 간) '23.12.1~'24.3.31(4개월)
  - ※ 선제조치 과제는 사전점검
- □ (구 성) 총괄점검팀(팀장 : 국조실 국무1차장) 및 5개 점검반\*
  - \* 점검반별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등 참여



### 환경부 종합상황실 (실장 :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)

- □ (역 할) 계절관리제 이행계획에 대한 부처·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 및 배출량 감축실적 점검
  - o (부처) 각 점검반장 책임 下 추진실적 및 애로사항 등 파악
  - (지자체) 지자체별 계절관리제 추진 점검(환경부·행안부)
    - ※ 지자체별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(매주/매월/전체기간)
  - (정보센터) 배출량 감축실적(매월) 및 농도 저감 효과 분석·공개
- □ (운 영) 총괄점검팀을 중심으로 상황관리, 주기적 점검회의 및 현장 조치 실태 확인
  - (이행점검) 일일 상황보고 → 주 단위 점검 → 월 단위 점검
  - (현장점검) 분야별 관계부처 합동점검팀 구성·운영

# 붙임 2 계절제 - 비상저감조치 분야별 주요 조치 사항

| 7 8        | 계획기간 중 지속 실시 사항  | 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 (비상저감조치)  |  |   |  |
|------------|--|--|--|---|--|
| 구 분        | 계획기간 중 지속 실시 사항<br>(계절관리제)   | 1단계(관심)  | 2단계(주의)  | 3단계(경계/심각)  |  |
| 산 업        | ·대형사업장 <b>자발적 감축</b>   | · 의무사업장 <b>가동률</b><br><b>조정 등</b><br>· <b>공공사업장</b><br>가동시간 <b>단축</b><br>(배출량 15~20% 감축) | · <b>공공사업장</b><br>가동시간 <b>추가</b><br><b>단축</b><br>(배출량 25~30% 감축)       | · 민간사업장 휴업<br>권고<br>· 공공사업장 휴업<br>검토(필수사업장 제외)<br>· 민간사업장 행정<br>지도(TMS 부착1~3종)<br>(가동시간 단축조정,<br>연료사용량 감축 권고) |  |
| 발 전        | · <b>사업장 불법배출 상시 점검</b><br>(첨단감시 장비, 민간점검단 등 활용)   | · <b>다량배출사업장</b><br><b>기동단속</b><br>(환경부지자체 중심,<br>관계부처 참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<b>사업장 대상</b><br>관계부처 합동점검<br>(점검·감시인력 지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사업장 점검 <b>가용</b><br><b>인력 총동원</b>   |  |
|            | · <b>석탄발전 가동축소</b><br>* 최대 15기 가동정지, 최대 47기 상한제약,<br>민간 자발적 감축<br>※ '24.3월 감축 규모는 '24.2월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| · <b>가동 중인 전체 화력발전 상한제약</b> (전력수급·계통 상황 고려)  |  |   |  |
|            | · <b>5등급 차량 운행제한</b> (수도권, 부산,<br>대구, 대전, 세종, 울산, 광주)  | ·5등급 차량 운행제한   | · (각 시·도 조례)   |   |  |
|            | 대구, 대전, 제공, 물전, 공구)<br>· <b>공영주차장 할증, 승용차 마일리지</b><br><b>추가 지급</b> (서울)  | 행정·공공기관 2부제 (전국)   |  |   |  |
|            | 추가 지급(서울)  | -  | · <b>관용(공용) 차량 운행 전면제한</b> (전국)  |   |  |
| 수 송        |  | -  | -  | · <b>민간 2부제</b> (자율)  |  |
| Т 6        | · 관급공사장(대기관리권역내 100억원 이상)<br>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<br>· 자발적 협약 등에 따른<br>민간공사장(서울, 경기, 부산<br>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 포함)<br>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| · <b>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중단</b><br>(전국, 모든 관급공사장)   |  |   |  |
|            | ·주거지 주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<br>및 농도정보 공개 확대  | · 비산배출 공사장<br><b>공사시간</b><br>조정·변경   | · <del>관급공</del> 사장<br><b>일부공정 제한</b><br>(터파기 등)                       | · 관급공사장 전면<br>중단  |  |
|            | (자발적 협약 등)   | 조정·변경  |  | · 민간공사 중단<br>권고   |  |
| 생 활        | · <b>집중관리 도로 확대 및 관리 강화</b><br>(일 2~4회 이상 청소)  | · 도로청소 강화(일 3~4회 이상 청소)<br>· 소방차 등 공공차량 도로청소 지원  |  |   |  |
|            |  | -  |  | · 민간 보유 청소차<br>추가 투입  |  |
| 건 강<br>보 호 | · <b>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저감조치<br/>강화</b><br>· 민감·취약계층 이용시설 <b>사전점검</b><br>· 옥외작업자 마스크 보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민감계층 보호조치<br><b>이행점검 강화</b><br>· 취약계층 이용<br>시설 마스크 비치<br>· <b>재난문자</b> , 홍보            | · <b>탄력적 근무</b> 권고  · 취약계층 이용 시설 마스크 지급  · 가용 <b>홍보수단 총동원</b> (재난방송 등) | ·야외 행사, 공연<br>일정조정 권고<br>·휴업·휴원 명령<br>검토<br>·마스크 무상 배포  |  |

### 붙임 3

### 제4차 계절관리제와 비교(주요 변경사항)

### 구분

감축

관리

### 제4차 계절관리제('22.12~'23.3월)

### · 5등급 차량 운행제한 (수도권, 부산, 대구)

- · 선박 연료유 점검(630척) 선박 저속운항 참여율(68%)
- · 자발적 감축 사업장(366개소)
- · 석탄발전 가동 축소
  - \* 8~14기 정지, 최대 44기 상한제약

### 국민 건강

-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(4,477개소) 및 자동측정망 설치(55개소)
- · 집중관리구역 지정(52개소)
- · 도로청소차 운행(1,794대)
- \* 전기·수소 도로청소차 664대
- · 집중관리도로 운영(2,003km)
- · 고농도 36시간 前 예보 시작 (수도권)

### 공공 선제 감축

- · 예비저감조치 수도권 시행
- ·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잠정 중단 (코로나 영향)

### <del>국</del>제 협력

·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기질 공동관리 기반 마련

### 제5차 계절관리제('23.12~'24.3월)

- ·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(수도권, 부산, 대구 → **대전, 울산, 광주, 세종**)
- · 선박 연료유 점검 확대(690척) 선박 저속운항 참여율 확대(73%)
- · 자발적 감축 사업장 확대(375개소)
- · 오염우심지역 중소사업장 실시간 원격감시·출동체계 가동
- · 석탄발전 가동 축소(전년 이상 감축)
  - \* 최대 15기 정지, 최대 47기 상한제약
- ·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(4,701개소) 및 자동측정망 설치 확대(71개소)
  - \* 서울시 지하역사 331개소 전수점검
- · 집중관리구역 지정(56개소)
- · 도로청소차 운행(1,854대)
  - \* 전기·수소 도로청소차 708대
- · 집중관리도로 운영(2,328km)
- · 고농도 36시간 前 예보 확대 (수도권 → 충청·호남권)
- · 예비저감조치 전국 시행
- · **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** (비상저감조치 시)

###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기질 공동관리 협력 확대

\* 한-미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('24.2~3월) 한-UNESCAP 대기질 지역협력 결의안 공동발의('24.2월)